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50
----------	------

2017년 2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16년 10월 31일

다. 회 부 일 : 2016년 11월 3일

라. 상 정 일 : 제27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7년 2월 21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조욱형)

가. 제안 이유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지방세 부과 등의 심의 또는 의결기관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1) 모범납세자 등 선정위원회 통합(제2조 본문)
- 2)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합리적 개선(제2조제1호)
- 3) 성실납세자 선발 및 지원 규정 삭제(제2조제4호)
- 4)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 명문화(제3조제4항)
- 5) 탈세혐의자 등은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혜택 배제(제3조제5항)
- 6) 모범납세자 위원회 구성 등 관련 규정 삭제(제2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협의완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협의완료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
-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협의완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16. 8. 11. ~ 8. 31.)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심의위원회 통합과 모범납세자 선정 지정 기준 논의의 필요성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1장 총칙에 목적(제1조), 선발(제2조), 지원(제3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제10조)하고, 제3장 보칙(제11조(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의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시행해오고 있음.
 -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범납세자 등 지원제도의 목적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이를 통해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 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데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동 조례 제1조).
- 본 개정조례안은 자주 개최되지 않는(연간 1회 개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모범납세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2조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흡수·통합하고(안 제2조 본문, 제5조~제10조 삭제), 탈세혐의를 통보받은 유공납세자의 지원혜택(3년간 세무조사 면제)을 배제하며(안 제3조제4항), 사실상 성실납부 유도 효과가 미미한 성실납세자 제도를 폐지하여 모범·유공납세자로 단순화(안 제2조제4호, 제3조제5항 삭제) 하는 등 모범납세자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나. 모범납세 심의위원회 폐지(안 제2조 본문 개정 및 제5조~제10조 삭제)

- 연간 1회 운영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의 운영 비효율성을 들어 현행 “모범납세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세기본 조례」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심의하도록 하고(안 제2조 본문),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된 조항(안 제5조~제10조)을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u>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	제2조(선발) ----- -----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1)에 따르면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여부 및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년 1회 모범 납세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미비하여, 지방세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흡수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최근 3년간 모범납세 심의위원회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능 :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심의 ○ 개최시기 : 정기회(매년 2월), 임시회(필요시) ○ 구 성 : 총 9명(내부위원-4명, 외부위원-5명)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위원회 개최 실적		
2014년	2015년	2016년
1	1	1

-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기본법」(제141조) 및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12조)²⁾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과세전적부심사³⁾,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의결, 지방세 시가표준액 심의 결정,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정보공개 심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 및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위원회의 통합·폐지) 시장 등은 위원회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2) 제12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3)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등의 통지내용 적법성에 관한 심사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요>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심의·의결 사항

-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동법 시행령 제108조 내지 제112조, 시세기본조례 제12조, 시세기본조례 규칙 제101조

□ 구 성

- 구 성 : 총 25인(위촉 22, 당연 3)
 - 위촉 : 외부위원 22명
 - 내부 : 재무국장, 세제과장, 세무과장
- 임 기 : 2년 (2017.1.1.~2018.12.31.)
- 위원장 선출 : 위촉위원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하여 선출 (⇒ 판사)
 - ※ 부위원장 : 법령에 재무국장으로 지정
- 위촉 방법 : 해당 협회에 추천 요청

□ 운 영

- 개 최 : 매월 1회, 매회 11인 이내 위원으로 선정
- 심 의 : 공개세무법정과 비공개심리의 2가지 형태로 구분 심의
- 의 결 : 선정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서울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 법(지방세기본법)에서 위원 구성 및 기능을 정한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그동안 성실하고 모범적인 납세자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로서 다듬어 왔던 “모범납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의 중복여부와 조세납부에 대한 보상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는 실정 등을 반영하여 동 조례를 제정했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현행 위원회의 폐지 여부에 대한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안 제2조 제1호)

- 안 제2조제1호는 모범납세자 선발기준을 현행 “최근 **3년간** 지방세⁴⁾ 체납없이 연간 **3건** 이상,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에서 “최근 **10년간** 체납없이 연간 **2건** 이상, **10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적용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재산분) / 건수 :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과세물 건수로 산정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안 내용>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개선 : 연간 3건, 3년간 납기내 납부 → 2건, 10년간

- 건수 : 현행 사업자·부유층만 선정 가능 → 봉급생활자도 기회제공(연간 3건 → 2건)
- 기간 : 장기간 성실납부자 우대 위해 기간 확대(3년 → 10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발) 생략 1. 모범납세자 :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서울 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제2조 1. ----- 10년 간 ----- ----- 2건 ----- ----- ----- ----- 10년간 ----- -----

○ 서울시민중 주택과 차량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현실인데도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은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최근 3년간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정되어 있어 사업자나 부유층만 선정이 가능했는바, 주택 1채와 차량 1대를 보유한 봉급생활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장기간 성실납부자를 우대하기 위해 기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장기간 성실납부자 기준을 현행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대상이 66만명에서 18만명으로 급격히 축소되는바, 타 시도보다 많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함으로써 안내시 많은 비용(2015년 1억1천1백만원)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대상의 축소는 의미있다고 할 것이나, 일반 시민의 성실한 납세를 고취시키고 우대하기 위한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그 기간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현행 서울시 28만명, 울산시 2만3천명, 부산시 1만3천명, 대구시 100명

<2건 이상으로 개정시 모범납세자 현황/15년 대상>

구 분	3년 이상	5년 이상	7년이상	8년이상	10년이상
2건 이상	657,038	441,642	314,384	260,804	181,489

※ 8년 이상 260,804건(개인 155,507명, 개인사업자 95,001명, 법인 10,296개)

현 행	수 정 의 건
제2조(선발) 생략 1. 모범납세자 :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제2조 1. ----- 10년 간 ----- ----- ----- 2건 ----- ----- ----- 8년간 ----- -----

라.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폐지(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5항 삭제)

- 안 제2조제4호 및 제3조제5항 삭제는 현행 지방세 납세고지서 1건당 1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인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지원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 **성실납세자 지원기준 및 내용** : 지방세 체납이 없는자로서 납세고지서 1건의 납부금액이 만원 이상인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에게 납부세액 만원당 1점의 세금포인트를 1회 100점 이내에 부여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선발) 4. <u>성실납세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납세고지서 1건의 납부금액이 만원 이상인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u>	제2조 <u><삭 제></u>
제3조(지원) ① ~ ④ (생략) ⑤ <u>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납부 세액 만원당 1점의 세금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이 경우 1회 부여하는 세금 포인트는 100점 이내로 한다.</u>	제3조(지원) ① ~ ④ (생략) <u><삭 제></u>

- 1건당 1만원 이상 기준에 따른 성실납세자 지원제도는 제도 도입시부터 서울시 모든 납세자가 해당될 수 있어 적용범위의 실효성이 적은 반면, 지원은 일부 부유 계층에 한정되어 많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불 때 지원제도 폐지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2010년 조례 개정(2010. 1. 7)을 통한 성실납세자 지원제도 도입시 집행부의 성실납세자 운영방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가 자진납부한 세액 1만원당 1점의 세금 포인트를 부여하며, 누적 세금포인트가 1,000점이상이 되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 예시 납세담보 면제라는 혜택을 부여하고, 누적 세금포인트가 2,000점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시 무료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누적 세금 포인트의 1,000점 초과분의 경우에는 1점을 세금마일리지 5원으로 환산하여 세금납 부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세금포인트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방안 마련 및 부칙의 경과조치 조항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성실납세자 운영방안(2010년)>

- ① 성실납세자 세금포인트 부여
 - ㉠ 대상세목 : 지방세 전 세목
 - ㉡ 대상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납세고지서 1건의 납부금액이 만원 이상인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
 - ㉢ 납부세액 1만원 당 1점의 세금포인트 부여 ※ 1회 상한 : 100점
- ② 세금포인트 활용 :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세부사항 규정
 - ㉠ 누적 세금포인트 1,000점 이상 :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 성실납세자 혜택 : '납세담보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절약 가능
*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5천만원 40만원, 1억원 80만원, 5억원 4백만원 수준
 - ㉡ 누적 세금포인트 2,000점 이상 : 지방세 관련 증명서 발급 시 무료 택배서비스
※ 지방세 관련 증명서 : 세목별 과세증명서, 납세증명서
 - ㉢ 누적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세금마일리지 전환 ⇒ 세금납부 가능
※ 세금포인트 마일리지 전환 : 1,000점 초과분, 세금포인트 1점 ⇒ 세금마일리지 5원
- ③ 연간 누적 세금포인트 규모 : 192백만점
 - ㉠ 납부세액 규모별 납부건수 등을 감안하여 추계(100점 상한 적용 3,586천건)
- ④ 세금포인트 조회 및 마일리지 전환 : ETAX시스템 내 시스템 구축

마. 탈세혐의 등의 모범 및 유공납세자 지원혜택 배제(안 제4조 신설)

- 안 제4조는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탈세관련 서류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배제하고, 탈세가 확정된 모범·유공납세자의 지원 내용을 모두 배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모범·유공납세자 선정후 탈세 법인의심통보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보류·박탈하여 조세 정의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안의 개정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모범납세자의 선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중 “10년간 계속하여”를 “8년간 계속하여”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8.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50 관련
----------	------------

제안년월일 : 2017년 2월 21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개정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모범납세자의 선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1호 중 “10년간 계속하여”를 “8년간 계속하여”로 수정함(안 제2조제1호).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10년간 계속하여”를 “8년간 계속하여”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선발) 생략 1. 모범납세자 :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u>3년간</u>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u>3건</u>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u>3년간</u>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제2조 1. ----- ----- <u>10년간</u> ----- ----- ----- <u>2건</u> ----- ----- ----- ----- ----- <u>10</u> ----- <u>년간 계속하여</u> ----- -----	제2조 1. ----- ----- <u>10년간</u> ----- ----- ----- <u>2건</u> ----- ----- ----- ----- ----- <u>8년간 계속하여</u> -----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년간”을 “10년간”으로, “3건”을 “2건”으로, “3년간 계속하여”를 “8년간 계속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며”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 3년간 세무조사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11조를 제6조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원의 배제)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제3조제4항의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항과 제4항의 지원 내용을 배제한다.

1. 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정한 경우

2. 국세·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

제5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위원회)”를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을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장 총칙</u></p> <p>제2조(선발)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u>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한다.</u></p> <p>1. 모범납세자 : 선발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한다)를 3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p> <p>2. 3. (생략)</p> <p>4. 성실납세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납세고지서 1건의 납부금액이 만원 이상인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납세자</p> <p>제3조(지원) ① ~ ③ (생략)</p> <p>④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u>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며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u></p> <p>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납부세액 만원당 1점의 세금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이 경우 1회 부여하는 세금 포인트는 100점 이내로 한다.</p> <p>제2장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 심의위원회</p> <p style="text-align: left;"><u><신 설></u></p>	<p><u><삭 제></u></p> <p>제2조(선발) ----- ----- -----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 -----.</p> <p>1. ----- 10 ----- 년간 ----- ----- 2 ----- 건 ----- ----- 8년간 -----</p> <p>2. 3.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3조(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고, 공영주차장의 1년간 주차요금, 3년간 세무조사와 ----- -----.</p> <p><u><삭 제></u></p> <p style="text-align: right;"><u><삭 제></u></p> <p>제4조(지원의 배제)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제3조제4항의 세무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항과 제4항의 지원내</p>

현행	개정안
<p>제4조(위원회) ① <u>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u></p> <p>② 위원회는 <u>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 3. (생략)</p> <p>4. <u>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u></p> <p>5. (생략)</p> <p>제5조(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② <u>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u></p> <p>1. <u>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5명 이내</u></p> <p>2. <u>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이내</u></p> <p>3. <u>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내</u></p> <p>③ <u>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u>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제7조(운영)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u></p> <p>② <u>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p> <p>③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용을 배제한다.</u></p> <p>1. <u>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정한 경우</u></p> <p>2. <u>국세·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u></p> <p>제5조(심의) ① <삭 제></p> <p>----- <u>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u></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현행 제5호와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u>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u></p>	<p><삭 제></p>
<p><u>제9조(관계기관 등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u></p>	<p><삭 제></p>
<p><u>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삭 제></p>
<p><u>제3장 보칙</u></p>	<p><삭 제></p>
<p><u>제11조 (생략)</u></p>	<p><u>제6조 (현행 제11조와 같음)</u></p>